



선행학습운영에 관한 운영 규정

규정번호	2-4-19
제정일자	2015. 12. 1.
개정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정의) 선행학습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과정 학생들에게 본교 입학 전에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선이수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이다.

제2조(개설시기) 선행학습은 하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한다.

제3조(수업기간 및 학점) 수업시간은 30시간을 5일이내로 진행하며, 2학점으로 한다.

제4조(개설교과목) 선행학습의 개설교과목은 본 대학 정규학기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한다.

제5조(수강대상자) 특성화고등학교,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,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중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(예정)자로서 고등학교, 대학, 산업체간에 협약(MOU) 등을 통해 차기년도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.

제6조(인정학점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7조의2(학점인정)에 의거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제7조(성적평가) ① Pass/Fail로 하며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고 취득학점에만 포함한다.

② 60점 미만은 Fail로 한다.

③ 총 수업 30시간 중 8시간 이상 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Fail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2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